

일제강점 초기 유곽공간의 법적 구성 및 입지 특성*

김종근**

The Legal Formation of the Red-Light Districts and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during the Early Colonial Times of Korea*

Jong-geun Kim**

요약 :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 내 식민도시들에는 소위 ‘대좌부 지정구역’이라 불린 유곽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성병 확산 및 풍속 괴란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비인간적인 감금 및 성병검진을 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창제도 도입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창제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해온 유곽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16년에 제정된 법령상에 나타나는 성매매 공간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부가된 유곽지도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 공간 내에서 유곽이 배치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식민 정부는 법조문 내에 유곽 구역을 지도형태의 삽화로 명시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분리시켜 유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유곽을 도시 공간 내에서 일반인들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도심 인근의 후미진 지역 혹은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에 배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구역은 위생 및 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간 차원으로까지 타자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공창제도, 유곽, 대좌부 지정구역, 식민도시, 입지분석

Abstract : During the colonial times, the red-light districts or Yukaku were located in the colonial cities. The districts were introduced in Colonial Korea by promulgating regulations on prostitution which regarded prostitutes as a major factor of diffusion of venereal diseases and social demoralization in 1916. This author focused on the overlooked spatial dimensions of the regulations by analysing articles on brothel buildings and attached maps on red-light districts, and locations of the red-light districts. As my analysis, the attached maps were functioned as a legal basis in segregating prostitutes.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red-light districts were located backstreets of downtown area or remote secluded areas of city outskirts. Ultimately, the prostitutes and the districts were constructed as Other and Other space not only by public health and moral discourses but also the spatial segregation tactics of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Key Words : Regulationism, Red-light district, Brothel, Colonial city, Location analysis

I. 서론

일제강점기 동안 성매매가 합법화된 공간이었던 유곽(遊廓)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였고, 1948년 미 군정청

법령 제7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1947.11.14. 제정, 1948.2.13. 시행)에 의해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사라졌다. 이러한 유곽으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성규제 혹은 공창제도(公娼制度)에 대해서는 여성학, 역사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556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gkim76@gmail.com)

학, 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공창제도에 대한 제도사적 측면 및 사회사적 측면이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공창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는 지점에서 성적, 민족적 차별이 극대화된 반인륜적인 특성은 자세히 밝혀진 바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특성 때문에 '전근대적'인 일본의 악습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가 주종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이 단순한 수탈의 형식이 아니라 식민지배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근대적 과학기술 특히 위생 및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운용된 된 제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박정애, 2009; 김종근, 2011).

한편 유곽은 성매매 여성들이 유폐되고, 관리된 폐쇄적 공간이었으므로, 공간의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리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도시 및 촌락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방갑주, 2012; 조성욱, 2012; 최원희, 2012), 유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김종근(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오히려 인접 학문인 도시학, 역사학 등에서 개별 도시의 유곽을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경성의 경우 손정목(1996), 강정숙(1998), 藤永壯(2004), 유승희(2013), 박현(2016) 등의 연구, 부산의 경우 양미숙(2009)의 연구, 인천의 경우 김희식(2012)의 연구, 군산은 이정욱(2016), 대구의 경우 임식경(2008), 신진영(2016) 등의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곽은 한반도 전역에서 존재한 것이므로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 대중서로 홍성철(2007)의 책자 및 김희식(2016)의 박사학위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일제강점기에서 현대까지의 한국 유곽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논저 모두 일제강점기 유곽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홍성철(2007)의 논저에서는 유곽의 입지에 대해 '철도역 인근에 유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유곽의 입지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도시상황을 감안한 채 해석을 하고 있다. 김희식(2016)의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유곽의 전국 분포까지는 지도화 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규정된 유곽 전수를 분석하지 않았고, 도시 공간 내에서의 유곽의 입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근대식 공창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핀 후, 식민정부 차원에서 1916년 이후 법령 제정을 통해 유곽(대좌부영업지역)으로 규정한 28개소에 대해 공간적 차원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구성된 유곽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관보에 기재된 유곽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후 각 유곽의 변화양상을 당시 발간된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유곽의 입지 분석이다. 한반도 스케일에서의 유곽 입지의 특성 뿐 만 아니라, 도시 공간 속의 유곽입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초기에 식민정부에서 제작한 지도류, 특히 1:25,000 축척의 지형도를 활용하여 입지를 분석하였다.¹⁾

II. 근대식 공창제도와 식민지 조선

1. 유곽 관련 용어의 개념

일제강점기 공창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용어가 존재하며, 용어의 의미 및 용어 간의 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우선적으로 유곽과 관련되는 용어의 의미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언급되어야 하는 개념은 성규제(regulationism)이다. 성규제는 근대시기인 18세기말 유럽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개념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를 성립해 나가던 국가에서 시행한 성관련 정책의 전반을 뜻한다(Howell, 2009:3). 이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매매 여성을 통한 성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경찰에 등록시키고 정기적으로 그녀들을 성병검사하고 성병에 걸린 경우 '성병 병원'에 감금하며, 필요시 구역을 설정하여 성매매 여성을 집결시킨다는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크게 '합법주의'와 '금지주의'가 존재하는데 성규제는 성매매를 국가가 관리하는 '합법주의'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947년 미군정 시기 공창제도가 폐지됨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합법주의' 혹은 성규제가 식민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공창제도라 부른다. 그럼 성규제와 공창제도는 동일한 의미인가?

성매매와 관련한 법의 적용을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표 1. 일제강점기 성규제의 범위

분류	성매매 합법 여부	법령상 용어	성병검진	영업장소	근거법령
공창(公娼)	합법	창기(娼妓)	정기적	대좌부(貸座敷)	「대좌부창기취체규칙」(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4호)
사창(私娼)	불법 (묵인)	예기(藝妓)	비정기	요리옥, 숙옥(宿屋)	「숙옥영업취체규칙」(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1호)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2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3호)
		기생(妓生)	비정기	요리옥, 숙옥(宿屋)	
		작부(酌婦)	비정기	음식점, 숙옥(宿屋)	
	불법	밀매음범자	비정기	숙옥(宿屋)	「숙옥영업취체규칙」(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1호) 「밀매음범자와 그 전과자 및 밀매음상습자에 대한 건강진단 건」(1916년 2월 위발 제79호)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1916년 3월 31일자.

공창제도 하에서는 성매매를 허가 받은 여성만이 성매매가 가능하고 이외의 사람들은 성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창제도가 존재하였던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정부는 성매매 여성인 창기(娼妓)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한 일본인 예기(藝妓), 조선인 기생(妓生), 술집 접대부인 작부(酌婦), 카페에서 일한 여급(女給) 등 유흥업 종사자 까지 관리하였다. 관리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여성들의 영업 등록, 비정기적인 건강검진(성병검진) 및 성매매 단속 등이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도 아니고 유흥업 종사자도 아니면서 무허가로 성매매를 행하던 이들도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밀매음범자’라 칭하고, 성매매 단속에 걸리는 대로 등록시키고 건강검진(성병검진)을 시행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이러한 유흥업 종사자 및 밀매음범자들은 ‘사창’이라 불렸다. 따라서 성규제의 범위는 공창과 사창을 모두 포함한다(표 1).

한편 식민정부는 성매매 관련 여성 뿐 만 아니라 이들이 일한 공간에 대해서도 관리를 시행하였는데, 성매매 업소를 대좌부(貸座敷)라 지칭하고 관리한 것 뿐 만 아니라, 예기가 모여 있던 예기치옥(藝妓置屋)과 예기와 기생이 일한 요리옥, 작부가 일한 음식점, 여급이 일한 카페까지 영업허가를 받고 관리하였다. 더불어 유흥업 종사자 및 밀매음범자가 불법 성매매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소인 숙옥(宿屋) 까지 성규제의 일환으로 관리하였다.

그럼 유곽이란 무엇인가? 일제강점기 동안 발표된 각종 법령에는 유곽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신문지상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기사를 유곽이

라는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데에는 일본의 성규제 역사에서 기인한다. 유곽은 전근대 일본에 존재한 성매매 공간이었는데, 막부는 1589년 유곽 설치를 허가하였고, 1617년 에도(현재 도쿄)에 요시와라(吉原)에 유곽이 설치되면서 확립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 유곽은 외국인들 사이에도 유명한 시설이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1872년 마리아루즈호 사건으로 유곽에 있었던 성매매 여성인 유녀가 노예계약인 상태가 국제적으로 비판받게 된 이후 일본 정부는 창기해방령을 공표하였다. 이후 일본의 공창제도는 용어를 변경하면서 부활하였는데, 성매매업소는 ‘유녀옥(遊女屋)’을 대신해 방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뜻의 ‘대좌부(貸座敷)’로 변경하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인 ‘유녀(遊女)’는 ‘창기(娼妓)’로 개칭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유녀들이 영업하는 유녀옥이 모여 있는 구역을 뜻하던 유곽은 1872년 이후 일본에서 법률용어로 사용되지 않았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역시 동일하였다(아마시타 영애, 1997:147). 그러나 일본 및 조선에서는 유곽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유곽은 성매매 업소 혹은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구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민정부의 법령상에는 유곽이 ‘대좌부영업(지정)지역’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좌부영업(지정)지역이란 용어 대신에 유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초기 합법화된 성매매 공간인 유곽 공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사창에 해당되는 여성들 및 이들의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초반기인 1910년대, 특히 1916년 공창제도의 공식화 결과에 따른 유곽공간의 법적 구성 및 유곽의 입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2. 근대 성규제

국가가 관리하는 성규제의 역사는 성매매의 역사에 비해 길지 않은데, 18세기 말 나폴레옹 시기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하여 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파급되고, 이후 유럽의 식민지들에도 확산되었고, 군사적, 제국주의적 논리에 의해 19세기 동안 전 세계에 퍼졌다. 이 제도가 널리 확산되던 당시 프랑스의 위생학자이자 성규제주의자인 알렉산드르 빠랑 뒤 샤텔레(Alexandre Parent du Châtelet)는 성매매를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에 비유하며 ‘필요악’으로 규정하여 성규제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규제주의는 역사학자 벌로 부부(Bullough and Bullough, 1987)의 분석처럼 그 효과가 달성된 예는 없었다. 즉 19세기 의학지식은 성병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성병 대책으로 부적절했고, 사생아의 출생률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성매매를 억제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악폐를 제거하지도 못했다. 더불어 여성을 성병 및 가족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적인 특성을 지닌 제도였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폐창운동이 발생하여 1886년에 식민지를 제외한 본국에서는 공창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근대 성규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근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들 국가들의 식민지에도 ‘근대적인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성규제가 근대적 제도로 자리 잡게 되는 데에는 근대 의학이라는 과학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성매매여성은 근대 의학지식을 지닌 의사들의 관리대상화 되었다. 이는 근대국가가 인구의 보건을 증시하는 ‘생명정치(biopolitics)’를 추구한 것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데, 성규제는 인구의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치가 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성매매 여성은 사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종족으로 구분되어 위생통계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된 것이다.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 성매매 여성은 더 이상 일반인들 사이에 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때문에 공간 전략까지 등장하였다. 즉 성매매 여성은 특정 공간에 감금하여 권력

의 시선에 노출되어야만 하는 존재였고, 재활원, 병원 혹은 감옥 등에 감금되어 훈육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곽 등과 같은 예방적인 격리가 추가되었다(Howell, 2009:6-10).

19세기 유럽 근대 국가들이 다수가 지향한 제국주의는 성규제가 도입된 또 다른 이유였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과 이외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해 영토를 팽창 시키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군대는 가장 먼저 근대화 되었고, 군인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군인의 성병 문제는 실제 영국이 러시아와의 크림전쟁에서 겪었던 문제였고, 이 때문에 영국은 자신들의 본토에서는 공창제도를 철폐하고도 식민지에서는 여전히 성규제를 유지시켰다(Howell, 2009:11-16).

아울러 유럽 제국의 근대식 성규제는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는 기제로도 작동하였다. 즉 서구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서구인은 정상적인 인종으로서 성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지만, 식민지의 피식민지민들은 성매매를 관습적으로 행하고 비위생적인 인종이기 때문에 성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성규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에 유럽제국의 식민지에서는 서구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 및 여성만 성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관리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식민지 시기 홍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Howell, 2009:17-21).

이처럼 근대 서구에서는 성규제가 근대과학기술의 산물이면서, 제국 군대의 안전을 지켜주는 발명품이었으며, 이 때문에 근대제국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성병확산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제대로 없었고, 더불어 성매매 여성을 타자화 시키고, 나아가 식민지의 피식민지민을 타자화 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공창제도

개항 이후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근대화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문물을 무차별적으로 습득하였다. 서구사회의 성규제는 이때 도입되었는데, 1872년 유럽 여러 국가의 경찰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경찰간부에 의해 공창제도(公娼制度)의 형태로 이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전근대 시기부터 존재한 유곽 시스템 덕분에 일본에서는 서구식 성규제가 이식되기에 매우 유리했고,

결국 기존의 유곽운영 시스템에 성병검진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 이식이 완료되었다. 즉 서구의 근대식 공창제도는 성매매 여성이 위생 및 도덕 담론을 통해 ‘타자’로 구성된 이후 지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졌다면, 일본에는 이미 성매매의 지리적 격리는 전근대 시기 ‘유곽’ 시스템 상 이루어져 있던 것이었고, 결국 등록 및 성병검진 등과 같은 행정상, 위생상 조치만 추가되면 되는 형태였다. 사실 이와 같은 성매매의 공간적 격리는 서구 제국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었고, 이러한 일본의 ‘유곽’ 시스템이 책자를 통해 서구에 소개되어 실제 프랑스의 식민지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Casablanca) 부스비르(Bousbir)에 일본의 유곽을 본 따 만든 격리된 형태의 성매매 공간이 1923년에 만들어지기도 했다(Staszak, 2014:175-196).

한편 근대시기 일본에 공창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타난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인 빈민층 및 도시 하층민이 다수 성매매 여성으로 유입되었고, 나아가 대만이나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하와이, 북미 까지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이란 이름으로 팔려갔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으로 온 가라유키상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박경은·류교열, 2013). 두 번째 특징은 군비확장을 위해 여타 분야의 재정을 긴축하게 되자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유곽을 만들어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었던 점이다. 아울러 유곽이 조성되면 직접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막대한 상업 이익을 수반하고 있었기에, 유곽의 유치는 지역 진흥을 위한 빠르고 유효한 방책으로 여겨졌다. 세 번째 특징은 군대의 증가에 따른 유곽 수요의 증가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제국은 군사력을 대폭 증가 시켰고, 사단의 숫자도 1888년에 6개에 불과하던 것이 러일전쟁 때 18개 사단으로 증가했다. 사단본부 등 주요한 군대 주둔 지역은 군사도시로 발전해 나갔는데,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도로와 공공시설이 건설되었고, 이동 인구나 소비인구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가 윤택해졌다. 더불어 군인을 상대로 한 유곽의 숫자도 증가하였다(김경자·윤정원 역, 2004).

4.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 도입

위와 같은 과정으로 확립된 일본의 공창제도는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한반도 내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식되기 시작했고,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1916년에 이식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 야마시타 영애(1997)는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개국 후 개항장과 개시장 등 일본인 거류지에서 일본인 성매매 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 설치와 함께 일본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조선인 사회의 성매매도 단속에 착수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식민지화 이후 조선총독부가 전국에 공창제도를 실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정부가 한반도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시키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의 일이다. 그러나 개항 이후인 1881년부터 이미 원산 및 부산 등지에서 예창기라 지칭된 성매매 여성들을 등록시키고 성병검진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곽이라 불린 구역에 성매매여성들을 밀집시키는 것은 20세기 들어서면서 부터인데, 부산, 인천에서는 1902년에, 서울에서는 1904년에, 목포에서는 1906년에, 군산에서는 1907년에, 대구에서는 1908년에, 평양에서는 1909년에 시작되었다. 이 당시 일본은 서구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성매매 여성들을 2종 예기라 불려 마치 성매매 여성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기도 하였고, 지역별로 성규제 법령을 독립적으로 도입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표 2. 일제의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 도입과정

단계	시기	특징	성규제 시작 시기 및 지역
1단계	1881년 ~ 1903년	개항장에서 일본인 성매매 여성 관리	부산(1881년), 원산(1881년), 인천(1884년)
2단계	1904년 ~ 1915년	개항장 및 주요 도시에서 일본인과 더불어 조선인 성매매 여성에 대해 관리	서울(1904년), 진남포(1904년), 목포(1906년), 군산(1907년), 대구(1908년), 평양(1909년) 등
3단계	1916년 이후	전국을 동일 법령으로 관리	식민지 조선 전역

출처 : 야마시타 영애, 1997.

인정하는 공창제도를 식민지 조선 전역을 대상으로 도입하게 된다. 1916년 3월 31일 발표하여 5월 1일자로 시행된 공창제도는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이다. 이와 더불어 「숙박영업취체규칙」, 「요리점음식점영업취체규칙」,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도 함께 발표하여 성매매와 관련되는 숙박업소, 요리점, 음식점, 대좌부를 구별하고 예기와 작부, 창기의 구별을 명확히 함으로서 완전한 형태의 근대식 성규제를 식민지 조선에 이식하였다(야마시타 영애, 1997:162).

III. 유곽공간의 법적 구성

1. 1916년 공창제도 법령의 특징

총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은 대좌부영업자, 영업지역(3조) 건물구조, 대좌부 영업자 준수사항, 경찰서 신고 내용, 영업조합, 유객명부, 창기와 대좌장부 작성 등 업자관련 조항, 창기의 영업 구역 및 방식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창기의 영업은 대좌부 안에 한정되었고, 그들의 거주와 숙박은 ‘대좌부지정구역’ 내로 제한되었다. 아울러 이 규칙에는 창기의 허가증 및 건강진단증 휴대 의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치료, 임신, 출산 시 규정 등이 정해졌다. 그리고 창기의 연령하한은 17세로 통일되었고, 남편이 있는 자의 영업은 금지되었다(야마시타 영애, 1997:163-164).

이 규칙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성매매 여성의 등록, 정기적인 성병검진, 영업구역의 제한 등 성규제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손님은 즉시 신고토록 하여 감시의 영역을 이용객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유곽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각종 범죄자를 체포한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이 규칙의 특징적인 점은 조선인 성매매 여성 및 업주에 대해 사실상의 방임을 의미하는 점이다. 즉 부칙으로 조선인의 경우 당분간 지정 지역 이외 영업을 허락하였고, 지정지역 밖으로의 외출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연옥(1998)은 총독부가 조선인 업자를 관리 하에 두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였고, 야마시타 영애(1997)는 조선사회에 성매

매를 만연하게 한 요소였다고 해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최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일본인 성매매 업자들이 지역 유지로 통할 정도로 재력을 과시한 반면 대다수의 조선인 업자들은 영세한 소규모 업자들이었다. 규정에 맞는 업소를 마련하기에는 조선인 업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이 과중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가 소규모 업자였던 조선인 업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이 규정을 강요하게 될 경우 자칫 반발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 조치였기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선인 업자를 포섭하기 위한 조치라는 송연옥(1998)의 해석과 통한다.

두 번째 이유는 민족차별적 성격이다. 이 규정에 따라 성매매 업소 및 성매매 여성이 관리 될 경우 성병 감염 및 화재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인데, 일본인 남성이 주로 이용한 일본인 업소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했지만, 조선인 남성이 이용한 업소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는 성병감염의 위험을 낮춘다는 공창제도의 관리 범위를 일본인에게만 한정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하웰(Howell, 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식민지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관리들의 경우도 서양인들이 가진 오리엔탈리즘적인 담론, 즉 피식민지민들은 비위생적이라는 관념을 지닌 타자 인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조선인들에게는 성규제와 같은 ‘근대적인 제도’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식에서 이러한 유보조항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대좌부창기취체규칙」 내 공간 요소

이 규칙 내 공간적 특성을 설정하는 조항들에는 크게 ‘대좌부영업 지정지역’에 대한 조항, ‘대좌부의 건물’ 관련 조항, 성매매 여성인 창기의 이동과 관련된 조항 등이 있다. 우선 ‘대좌부영업 지정지역’ 설정은 제3항으로 각 도 경무부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16년 5월에서 1917년까지 전국의 각 도 경무부장이 고시하였다. 성매매 업소인 ‘대좌부’의 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제1조와 제4조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데, 제1조에서는 업소의 방배치, 계단, 요리장, 욕실, 화장실, 오수처리 시설 등의 위치를 나타내는 평면도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객실의 환기, 채광, 보온장치, 계

표 3. '대좌부영업 지정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별 유곽

연번	도	부/군	면, 동/리	법령	도면 유무
1	경기도	경성부	신정	경기도 경무부 고시 제1호(1916.5.1.) 대좌부영업지역 변경지정(1917.8.27.)	유
2	경기도	경성부	미생정	경기도 경무부 고시 제1호(1916.5.1.)	유
3	경기도	인천부	부도정	경기도 경무부 고시 제1호(1916.5.1.)	유
4	경상남도	부산부	녹정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7호(1916.5.1.)	유
5	경상남도	부산부	초량동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6	경상남도	부산부	영선동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7	경상남도	마산부	수정, 원정, 만정, 석정 일부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8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면 길아정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7호(1916.5.1.)	유
9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10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면 일출정, 연작정, 암호정, 우의정, 일보정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11	경상남도	진주군	진주면 대안동, 평안동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12	경상남도	울산군	동면 방어리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13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장생포리, 용잠리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14	경상남도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8호(1916.5.1.)	유
15	전라북도	군산부	신흥동	전라북도 경무부 고시 제5호(1916.5.1.)	유
16	전라북도	전주군	이동면 주동	전라북도 경무부 고시 제5호(1916.5.1.)	유
17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	전라북도 경무부 고시 제5호(1916.5.1.)	유
18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부동정	전라남도 경무부 고시 제18호(1916.6.20.)	유
19	전라남도	목포부	앵정	전라남도 경무부 고시 제18호(1916.6.20.)	유
20	함경남도	원산군	수정, 행정	함경남도 경무부 고시 제3호(1916.5.15.)	유
21	함경남도	원산부	양지동	함경남도 경무부 고시 제4호(1917.8.22)	무
22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풍서리	함경남도 경무부 고시 제5호(1916.12.13.)	유
23	함경북도	청진군	북성정	함경북도 경무부 고시 제4호(1916.9.20.) 함경북도 경무부 고시 제42호(1918.5.29.)	유
24	평안남도	평양부	진정 및 앵정	평안남도 경무부 고시 제4호(1917.7.2.)	무
25	평안남도	평양부	죽전리, 이항리, 염점리	평안남도 경무부 고시 제4호(1917.7.2.)	무
26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면 춘일정1정목	충청남도 경무부 고시 제3호(1917.7.9.)	무
27	경상북도	대구부	칠성정	경상북도 경무부 고시 제4호(1917.8.18.)	무
28	황해도	황주군	송림면 동검이포리	황해도 경무부 고시 제4호(1918.5.29.)	무

출처 : 조선총독부 판보, 1916년 5월 18일자; 6월 1일자; 6월 24일자; 7월 5일자; 8월 22일자; 10월 9일자; 12월 22일자; 1917년 7월 9일자; 7월 19일자; 8월 24일자; 9월 1일자; 1918년 6월 7일자; 1921년 9월 28일자.

산시설, 출입구 및 비상구, 화장실과 부엌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하리미세(張(リ)店)²⁾는 도로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제8조에는 필요시 방화벽 및 방화시설 설치, 소화기 설치, 3층 이상 건물에는 피난 장비 구비, 비상구 표시 및 표시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정부는 성매매 업소의 안전 및 위생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을 대좌부(貸座敷)는 성매매 여성인 창기(娼妓)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감옥이었다. 우선 제20조에 따르면 창기는 부모간호 및 치료요양을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대좌부영업 지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대좌부영업 구역내 존재한 병원에 매주 방

문하여 치욕적인 성병검진을 받아야만 했다(박정애, 2009). 즉 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 안에서 업주와 경찰, 그리고 의사에 의한 다차원적인 감시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3. '대좌부 지정구역' 도면 분석

1916년 경무총감부령으로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이 발포된 이후 동 조항 제3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청 단위로 '대좌부구역'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유곽설치를 공식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는 경성부 2곳, 인천부 1곳 등 총 3곳을, 경상남도에는 부산부 3곳, 마산부 1곳, 통영군 2곳, 창원군 1곳, 진주군 1곳, 울산군 2곳, 동래군 1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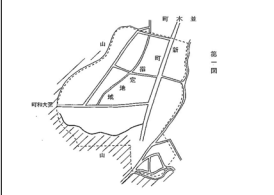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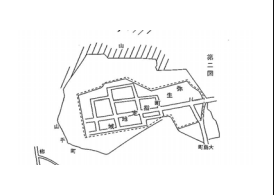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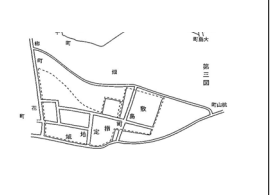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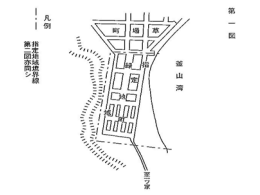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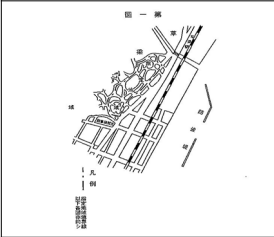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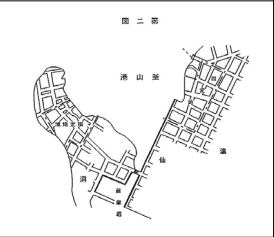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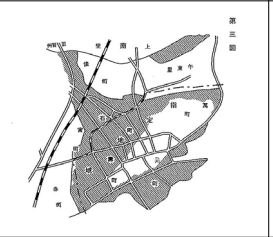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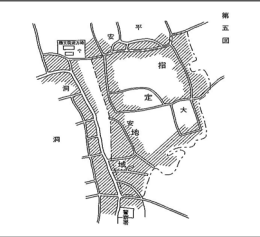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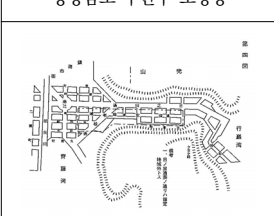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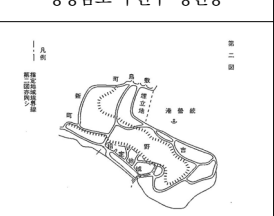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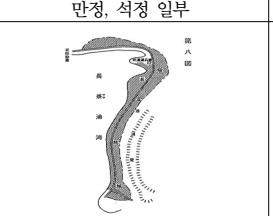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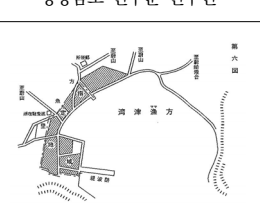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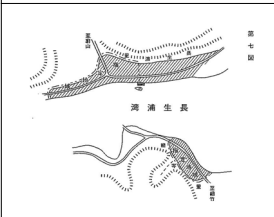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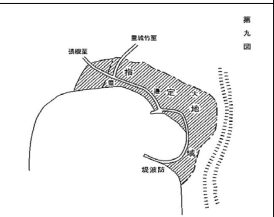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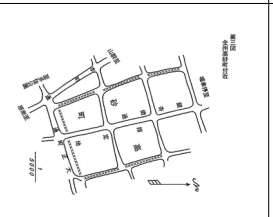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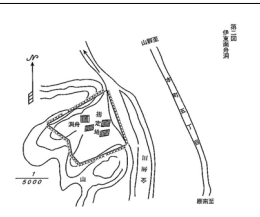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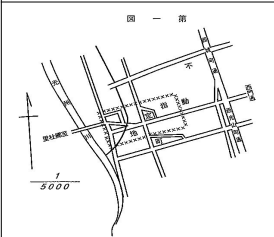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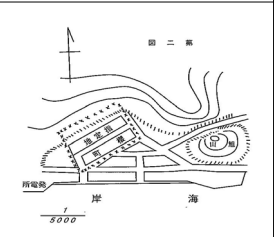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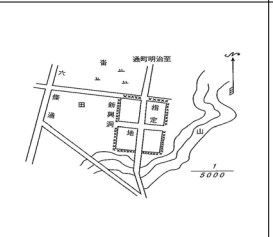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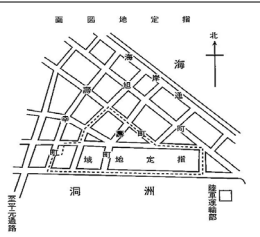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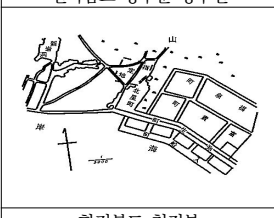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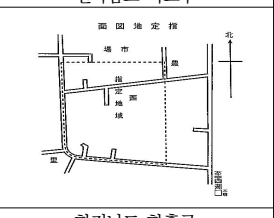
			
경기도 경성부 신정	경기도 경성부 미생정	경기도 인천부 부도정	경상남도 부산부 녹정
			
경상남도 부산부 초랑동	경상남도 부산부 영선동	경상남도 마산 수정, 원정, 만정, 석정 일부	경상남도 진주군 진주면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면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면	경상남도 통영군 장승포	경상남도 울산군 방어진
			
경상남도 울산군 장승포	경상남도 동래군 대변리	전라북도 전주군 고사정	전라북도 전주군 주동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전라남도 목포부	전라북도 군산부	함경남도 원산부
			
함경북도 청진부	함경남도 함흥군		

그림 1. '대좌부영업지정지역' 도면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1916년 5월 18일자; 6월 1일자; 6월 24일자; 7월 5일자; 8월 22일자; 10월 9일자; 12월 22일자.

등 총 11곳, 전라북도에는 군산부 1곳, 전주군 2곳 등 총 3곳, 전라남도에는 목포부 1곳, 광주군 1곳 등 총 2곳, 함경남도에는 함흥군 1곳, 원산부 2곳 등 총 3곳, 함경북도에는 청진부 1곳, 평안남도에는 평양부 2곳, 충청남도에는 대전군 1곳, 경상북도에는 대구부 1곳, 황해도에는 황주군 1곳 등 총 28곳을 '대좌부영업 지정지역'을 고시하였다(표 3).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2곳, 경상남도 7곳, 전라북도 2곳, 전라남도 2곳, 함경남도 2곳, 함경북도 1곳, 평안남도 1곳, 충청남도 1곳, 경상북도 1곳, 황해도 1곳이며, 평안북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에는 없다.

22매의 유곽 도면을 지도학적 기본 요소인 축척, 방위, 범례의 유무 여부로 분석해 보면 축척의 경우 전라북도 전주군 2곳, 군산부, 전라남도 광주군, 전라남도 목포부, 함경북도 청진부 등 6매에만 기재되어 있고, 모두 1:5,000 스케일이다. 방위 표시의 경우 축척이 기재된 6매 이외 함경남도 원산부와 함경남도 함흥군 도면 등 총 8매에 기재되어 있다. 범례의 경우 유곽의 범위를 나타낸 범례만이 부산부 2매, 통영군 1매 등 3매에 존재한다.

자연 지형의 경우 산지, 하천, 해안, 만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우선 산지는 빗금으로 표시한 곳이 경성부 2매, 부산부 1매, 창원군 1매, 울산군 2매 등 6매에서 나타났고, 등고선 형태로 나타난 경우는 전주군, 목포부, 군산부 등 3매이다. 하천은 전주군 주동(전주천), 광주군(광주천) 등 두 곳에서 나타났다. 해안은 특별한 표시 없이 '해안'이라 기재된 것이 청진부, 목포부 2매 '해(海)'라 표시된 것이 원산부 1매 존재한다. 만의 경우도 지명으로 표시된 것인데 부산만, 통영만, 장승포만, 방어진만, 제등만, 행암만 등 5개의 명칭이 이 5매에서 나타난다.

인문 경관요소의 경우 지정지역 표시 외에 가로망, 철도노선, 철도역, 항구, 나루터, 방파제, 매립지, 공공기관 및 시설, 농경지, 행정구역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대좌부 지정지역 표시는 도면상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이므로 기호표시와 지정지역 이란 명칭까지 표시되었다. 기호표시에는 파선, 일점쇄선, x자 표시 등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며 파선은 경성부 2매, 인천부 1매, 원산부 1매, 청진부 1매, 함흥군 1매 등 6매가, 일점쇄선은 부산부 3매, 통영군 2매, 마산부 1매, 울산군 2매, 창원군 1매, 진주군 1매, 동래군 1매 등 11매, x자표시는 광주군 1매, 목포부 1매, 전주군 2매, 군산부 1매 등 총 5매이다. 지정지역 명칭에는 '지정지역'이 경성부 2매, 인천부 1매, 부산부 3매, 통영군 2매, 마산부 1매, 울산군 2매, 진주군

1매, 창원군 1매, 동래군 1매, 원산부 1매, 함흥군 1매 등 총 16매이고, '지정지'가 군산부 1매, 전주군 2매, 광주군 1매, 목포부 1매, 청진부 1매 등 총 6매이다. 가로망의 경우 모든 도엽에서 나타나며, 경성부 1매, 울산군 2매, 진주군 1매, 통영군 1매, 동래군 1매, 광주군 1매, 전주군 1매, 군산부 1매, 함흥군 1매 등 총 10의 도엽에서 '지(至) ○○○'라 표시하여 인근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철도노선은 부산부 1매, 마산부 1매 등 2매에서, 철도역은 부산부 1매(초량역)에 지명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항구는 부산항, 통영항 등 2개의 지명 나타나며 통영항의 경우 지명과 함께 항구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나루터는 울산군 장생포 도엽에 그림형태로 존재하며, 방파제는 부산부 1매, 울산군 1매, 동래군 1매 등 3매에서 나타난다. 매립지의 경우 통영군 지도에서 '매립지'라는 글자와 파선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공공기관 및 시설에는 지나영사관(부산부 초량), 지방법원지청(마산부), 경찰서(마산부), 우편소(울산군 방어진), 순사주재소(울산군 방어진), 헌병파출소(통영군 장승포), 육군운수부(원산부), 시장(함흥군), 발전소(목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농경지의 경우 군산부 도엽에 논(畝)과 밭(田)이 기재되어 있고, 논을 상징하는 기호가 3개 표시되어 있다. 행정구역 명칭은 22개 도엽 모두에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곽 도엽을 지도학적으로 평가하면 6매의 지도만이 축척과 방위를 사용하여 형식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16개 도엽은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들 지도가 '대좌부지역'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도엽에 '대좌부지역'이 표시된 점, 그리고 이러한 '대좌부지역'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연 및 인문경관 요소들이 필요에 따라 표시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지도는 지도의 기본 요소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좌부지역'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목적을 충실히 따른 지도형태를 띤 삽화라 평가될 수 있다.

IV. 유곽의 입지 특성

1. 한반도 스케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6년 법령 공포 이후 총 28곳의 '대좌부지정지역'이 고시되었는데, 이들 지역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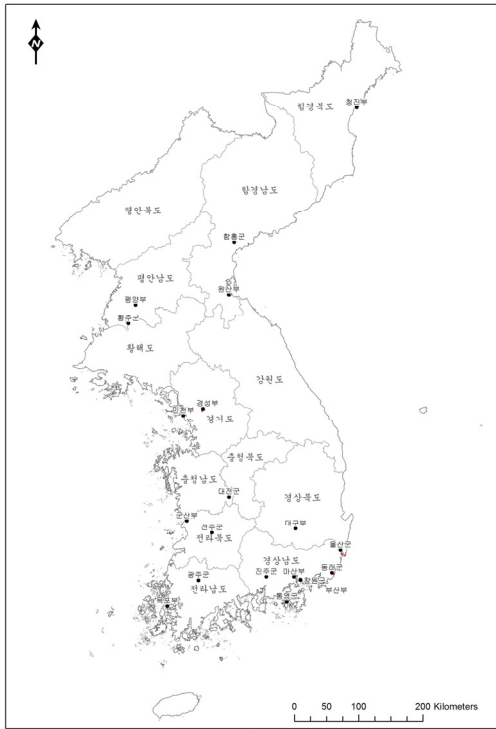


그림 2. 유곽 분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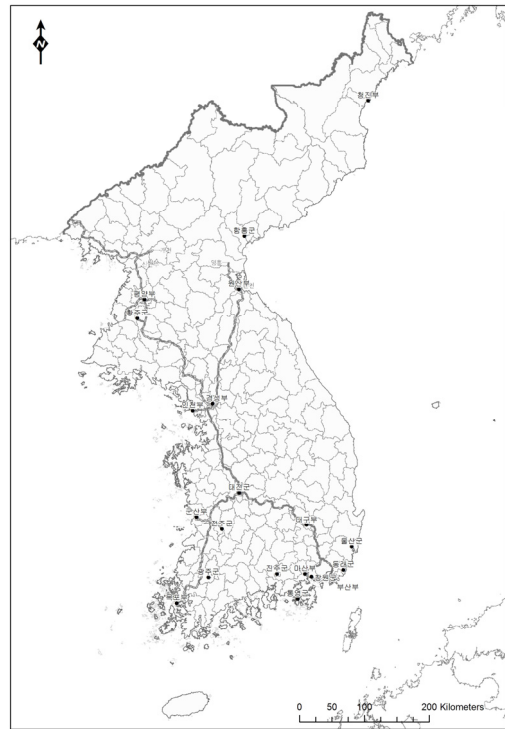


그림 3. 1916년 당시 철도망과 유곽 분포

* 그림 2는 필자 작성, 그림 3은 한국 역사지도 근대편을 참고하여 작성.

정구역별로 나눠 보면 부(府)에는 경성부, 인천부, 부산부, 마산부, 대구부, 군산부, 목포부, 원산부, 평양부, 청진부 등 10곳이, 군(郡)에는 통영군, 창원군, 울산군, 진주군, 동래군, 전주군, 광주군, 대전군, 함흥군, 황주군 10곳 등 총 20개 행정구역상에 지정되었다(그림 2).

유곽의 수를 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부산부, 마산부, 울산군, 동래군, 창원군, 통영군, 진주군 등 7개 부군에 11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의 경성부, 인천부 등 2개부에 3개소, 전라북도의 군산부, 전주군 등 2개 부군에 3개소, 함경남도의 원산부와 함흥군 등 2개 부군에 3개소, 전라남도 목포부와 광주군에 2개 부군에 2개소, 평안남도의 평양부에 2개소, 충청남도의 대전군에 1개소, 경상북도의 대구부에 1개소, 함경북도의 청진부에 1개소, 황해도의 황주군에 1개소 등이다. 반면에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평안북도에는 유곽이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구역별로 나눠지는 20개 지역을 지리적 특성으로 분류해 보면 총 5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

로 대도시형, 개항장형, 전통도시형, 군사도시형, 교통 및 산업도시형이다. 우선 대도시 형에는 경성부, 평양부, 대구부 등 3곳을 들 수 있고, 개항장형은 부산부, 인천부, 원산부, 마산부, 군산부, 목포부, 청진부 등 7곳을 들 수 있다. 전통도시형은 조선시대 까지는 지역 중심지였으나 일제강점으로 부로 승격하지는 못했던 곳들로 진주군, 전주군, 광주군, 함흥군 등 4지역이 해당된다. 군사도시형에는 창원군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 조선총독부 최초의 계획 군사도시인 진해면이 있었다. 이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경성부, 대구부, 평양부 등 대도시에도 모두 군사기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산업도시형이 있는데, 철도교통은 대전군 대전면, 어업 취락은 울산군 방어리와 장생포리, 통영군 길야정과 장승포리,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 제철산업은 황주군 검이포리가 해당된다.

유곽의 입지에 있어서 흔히 철도교통과의 상관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홍성철(2007)의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1906년~1930년대를 '철도유

표 4. 유곽이 위치한 도시의 유형 분류

유형	도시
대도시형	경성부, 평양부, 대구부
개항장형	부산부, 인천부, 원산부, 마산부, 군산부, 목포부, 청진부
전통도시형	진주군, 전주군, 광주군, 함흥군
군사도시형	창원군(진해면)
교통 및 산업도시형	교통도시: 대전군 어업취락: 울산군(장생포리 방어리), 통영군(길야정, 장승포리), 동래군(대변리) 제철산업: 황주군(검이포리)

곽시대'라 칭하고 '철도역=유락가'라는 등식이 시작된 시기라 칭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1916년까지 부설된 철도망에 유곽이 위치한 지역을 겹쳐서 파악해 보았다(그림 2). 총 20곳의 지역 가운데 경성부, 인천부, 부산부, 마산부, 대구부, 목포부, 군산부, 평양부, 원산부, 황주군, 대전군, 전주군, 광주군 등 13개 지역에 철도역이 건설되었고, 청진부, 울산군, 진주군, 동래군, 창원군, 통영군, 함흥군 등 7개 지역에는 철도역이 없었다. 이는 '철도역=유락가'라는 공식이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 주장하기에는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바이다. 도시스케일에서는 이 공식의 문제점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2. 도시 스케일

'대좌부지정지역' 혹은 '대좌부지정지'라 불린 유곽의 입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도의 경무부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곽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된 조건은 「대좌부창기업자취체규칙심득(1916년 4월 20일 경무총감부 내훈 갑제 14호)」 제1조 3항 「지정지역과 관공서, 학교, 신사, 교회, 병원 등과의 관계」를 각 도의 경무부장이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식민 경찰의 수뇌부가 직접 입지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법령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곽을 입지시킨 원칙은 '풍기취체'라 불린 도덕적 기준과 '공중위생'이라 불린 의학적 기준이었고, 이 때문에 유곽은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이나, 도심 주변의 경우 뒷골목 등의 후미진 곳에 입지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916년에서 1917년에 지정된 유곽 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 그림 4, 5, 6이다.

유곽의 도시 내 입지 분석 대상은 전체 28개 대좌부지정구역 가운데 위치가 불명확한 황해도 황주군의 1개소를 제외한 27개소이다. 그리고 지도상에 시행한 입지분석은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의 1개소를 제외한 2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우선 도심내에 유곽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도청, 부청, 군청 등 관청을 중심으로 1Km 동심원을 그려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산부 초량동, 부산부 영선동, 통영면 길야정, 진주군 진주면 대안동, 군산부 신흥동, 전주군 고사정, 광주군 광주면 부동정, 목포부 영정, 원산부 수정, 함흥군 풍서리, 청진군 북성정, 평양부 죽전리, 대전군 대전면 춘일정, 대구부 팔중원정 등 14곳이 도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경성부 신정, 경성부 미생정, 인천부 부도정, 부산부 녹정, 마산부 수정, 전주군 이동면 주동, 원산부 양지동, 평양부 진정 등 8곳이 외곽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창원군 진해면 일출정, 울산군 동면 방어리, 울산군 대현면 장생포리,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 등 5곳은 주요 행정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리하자면 1916년에서 1917년까지 설치된 유곽 중 도심 및 시가지에 위치한 유곽이 외곽에 위치한 곳 보다 두 배 이상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내 유곽의 입지에도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도심 지역 내에 위치한 유곽들은 모두가 일반인들의 시선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였다. 즉 대로변에 위치한 유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유곽이 이면도로나 시가지 말단부, 혹은 산이나 바다로 둘러싸여진 지역 등 접근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였다. 두 번째로는 도심부에 위치한 유곽 중 일부가 철폐된 점이다. 도심에 위치한 총 14곳의 유곽 가운데 부산부 초량동,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 원산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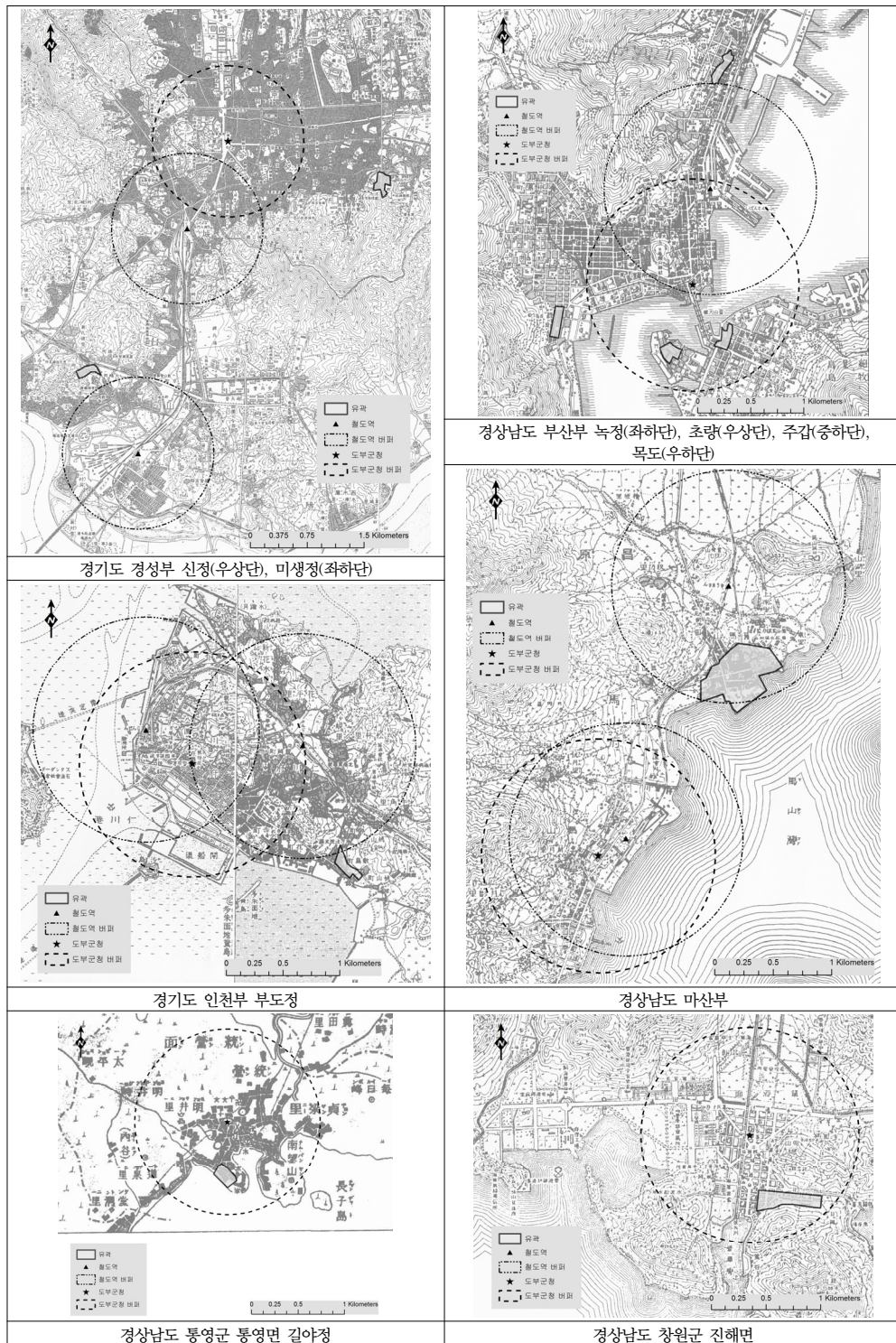


그림 4. 유곽의 도시 내 입지 분석 1

* 朝鮮半島地圖資料研究會 編(1999)을 근거로 필자가 범례에 맞추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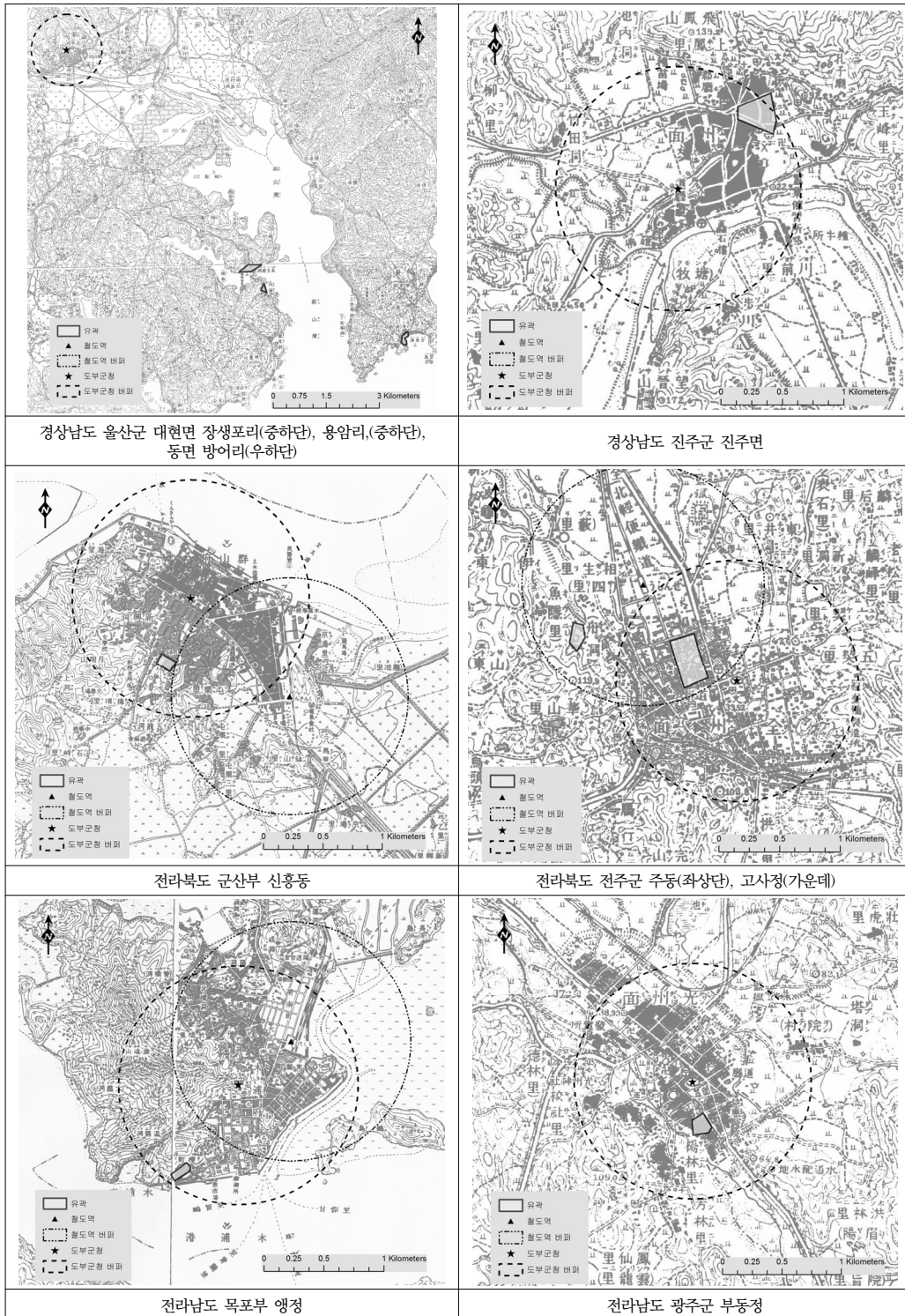


그림 5. 유곽의 도시 내 입지 분석 2

* 朝鮮半島地圖資料研究會 編(1999)을 근거로 필자가 범례에 맞추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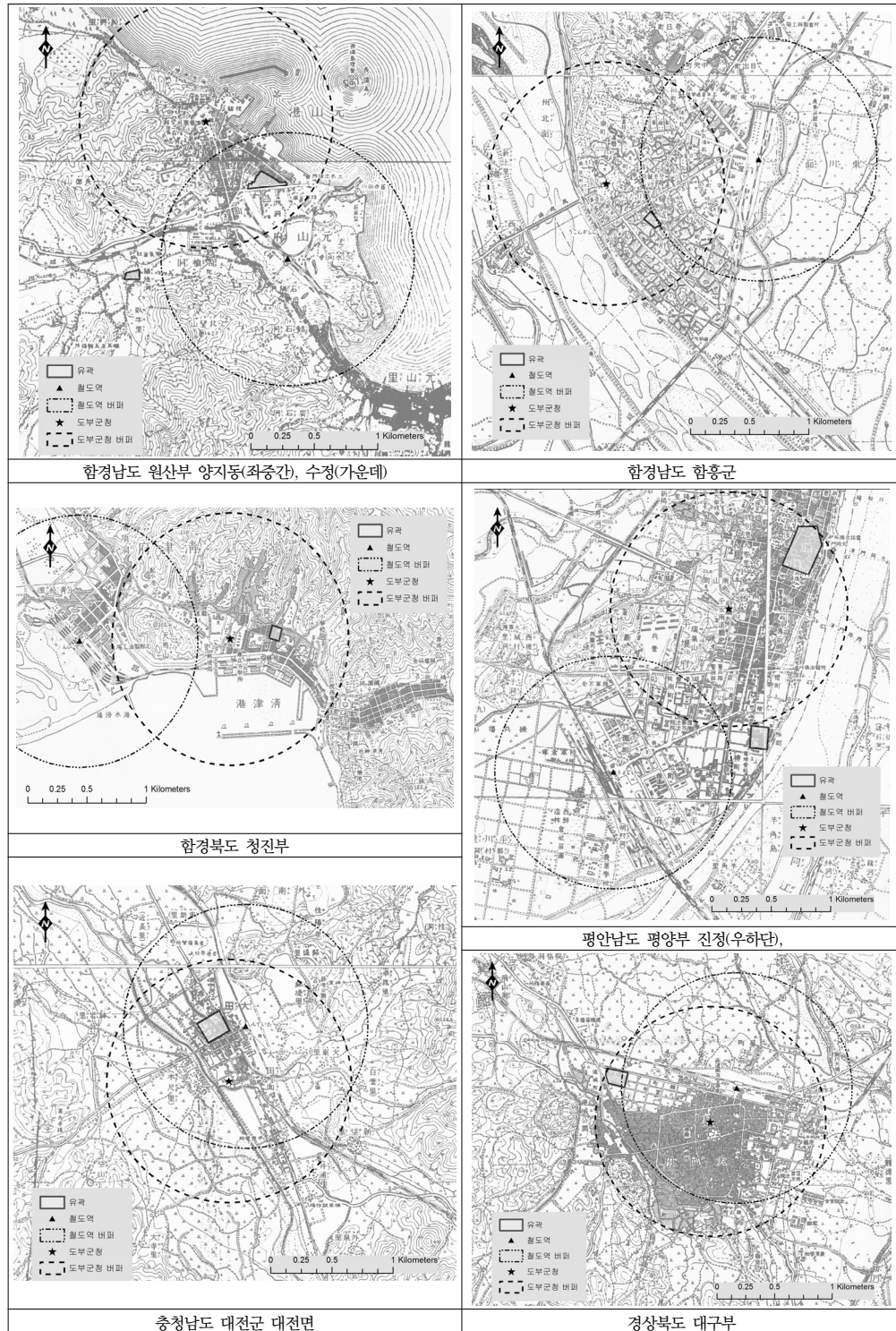


그림 6. 유곽의 도시 내 입지 분석 3

* 朝鮮半島地圖資料研究會 編(1999)을 근거로 필자가 범례에 맞추어 작성.

표 5. 유곽의 도시 내 입지 분석 결과

연번	도	부/군	면, 동/리	유곽명칭	지속기간	유곽입지	철도역 존재
1	경기도	경성부	신정	신정유곽	1904년 ~ 1947년	외곽	무
2	경기도	경성부	미생정	미생정유곽	1906년 ~ 1947년	외곽	무
3	경기도	인천부	부도정	부도정유곽	1902년 ~ 1947년	외곽	무
4	경상남도	부산부	녹정	녹정유곽	1911년 ~ 1947년	외곽	무
5	경상남도	부산부	초량동	초량유곽	1905년 ~ 1922년(철폐)	도심	유
6	경상남도	부산부	영선동	목도유곽	주갑 (1909년 ~ 1930년대 철폐) 목도 1909년 ~ 1947년	도심	무
7	경상남도	마산부	수정, 원정, 만정, 석정 일부	없음	1912년 ~ 1947년	외곽	유
8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면 갑야정	통영유곽	1912년 ~ 1947년	도심	무
9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없음	1912년 ~ 1947년	시가지	무
10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면 일출정, 연작정, 암호정, 우의정, 일보정	진해유곽	1912년 ~ 1947년	시가지	무
11	경상남도	진주군	진주면 대안동, 평안동	없음	1912년 ~ 1947년	도심	무
12	경상남도	울산군	동면 방어리	없음	1912년 ~ 1947년	시가지	무
13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면 장생포리, 용잠리	없음	1912년 ~ 1947년	시가지	무
14	경상남도	동래군	기장면 대변리	없음	1912년 ~ 1947년	시가지	무
15	전라북도	군산부	신흥동	군산유곽	1907년 ~ 1947년	도심	무
16	전라북도	전주군	이동면 주동	전주유곽	1916년 ~ 1947년	외곽	유
17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	없음	1909년 ~ 1917년 (철폐, 주동으로 이전)	도심	유
18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부동정	광주유곽	1910년 ~ 1947년	도심	무
19	전라남도	목포부	앵정	없음	1914년 ~ 1947년	도심	무
20	함경남도	원산부	수정, 행정	없음	1908년 ~ 1917년 (철폐, 양지동으로 이전)	도심	유
21	함경남도	원산부	양지동	양지동유곽	1916년 ~ 1947년	외곽	무
22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풍서리	함흥유곽	1916년 ~ 1947년	도심	유
23	함경북도	청진군	북성정	청진유곽	1909년 ~ 1947년	도심	무
24	평안남도	평양부	진정 및 앵정	진정유곽	1908 ~ 1947년	외곽	무
25	평안남도	평양부	죽전리, 이향리, 염점리	없음	1908년~1917년(철폐)	도심	무
26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면 춘일정1정목	춘일유곽/ 춘일신지유곽	1917년 ~ 1947년	도심	유
27	경상북도	대구부	팔중원정	대구유곽	1908년 ~ 1947년 (1917년에 칠성정으로 이전 계획 하였으나 실패)	도심	유
28	황해도	황주군	송림면 동검이포리	없음	확인 불가	확인불가	확인 불가

* 유곽명칭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검색 결과임.

** 유곽입지의 경우 도부군청 으로부터 1Km 이내는 '도심', 이외는 '외곽', 관청이 없는 경우 '시가지'로 표시함.

*** 철도역 존재의 유무는 철도역에서 1Km 이내에 존재하면 '유', 1Km 밖이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로 표시함.

평양부 죽전리 등 4개소의 유곽이 1917년에서 1920년대 초반 사이에 모두 철폐되었다. 이들 유곽은 모두 외곽에 새로 설치된 유곽 즉 부산부 녹정, 전주군 이동면 주동, 원산부 양지동, 평양부 진정 등지의 유곽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도심 지역 내의 유곽에 대한 이전은 1916년

이전에도 있었는데, 김중근(2011a)의 연구에 따르면 경성부 도심에 존재했던 유곽 및 성매매 업소들이 1915년까지 외곽의 신정유곽과 미생정유곽으로 이전되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도심 및 시가지에 위치한 유곽에 대한 시민들의 이전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다. 동아

일보 기사에 따르면 도심 및 시가지에 유곽이 존재하였던 경성부 신정, 진주군 진주면 대안동,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광주군 광주면 부동정, 함흥군 풍서리, 대구부 팔중원정 등 6곳의 유곽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였다(동아일보, 1936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1929년 6월 27일자; 동아일보, 1928년 5월 25일자; 동아일보, 1926년 10월 15일자; 동아일보, 1936년 1월 7일자; 동아일보, 1940년 3월 24일자). 아울러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도시확장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외곽으로 이전될 계획이라는 기사도 등장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22년 11월 14일자). 추가적으로 외곽에 위치하였던 유곽의 경우에도 시가지의 확대에 의해 유곽을 이전시켜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경성부 신정유곽이 대표적인 예이다(유승희, 2013).

이러한 유곽 입지의 변화 조짐이 192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일제가 물러가기 전까지 도심 및 시가지내의 유곽 숫자는 15곳으로 외곽에 위치한 유곽의 수인 10곳을 넘어서고 있었다. 더불어 이전이 필요하다고 식민정부가 판단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실행되지 못한 지역도 있다. 대구부 팔중원정의 유곽은 식민정부가 외곽지역인 칠성정으로 이전시키겠다고 1917년에 조선총독부 관보상에 게시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속칭 ‘자갈마당’이란 이름의 사창가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전이 실패한 연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상이 현재까지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유곽업자들이 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유곽의 입지에 대한 홍성철(2007)의 주장인 ‘철도역=윤락가’라는 공식은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시행해 보았다. 지도상에 유곽의 위치와 철도역의 표시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1Km 버퍼링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철도역으로부터 1Km이내에 존재하는 유곽은 부산부 초량동, 마산부 수정, 전주군 이동면 주동,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 원산부 수정, 함흥군 함흥면 풍서리, 대전군 대전면 춘일정, 대구부 팔중원정 등 8곳에 불과했다. 반면 19곳의 유곽은 철도역 인근에 입지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유곽과 철도역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인 65% 보다 낮은 수치인 30%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로써 ‘철도역=윤락가’라는 공식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임이 확인되었다.

3. 타자공간으로서 유곽

그러면 일제강점기 유곽은 어떤 원리에 의해 입지한 것일까? 성매매 시설의 입지에 대한 일반론은 서구에서 주로 연구된 바 있는데, 주로 도심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 내지 철도역이나 항구 등 교통시설 주변에 입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Ashworth *et al.*, 1988; Hubbard and Whowell, 2008; Hubbard *et al.*, 2008).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유곽공간의 배치양상은 서구 도시에서의 성매매 시설 분포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매매공간이 조성된 이유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식민도시 경성을 사례로 한 김종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유곽공간이 구성되는 주요한 원인에는 군대주둔, 도시계획, 민족담론 등 세 가지가 존재한다. 군인의 성병감염 차단을 위해 군사시설 인근에 입지한 경우는 경성부 뿐 만 아니라, 창원군 진해면, 평양부, 대구부 등을 들 수 있다. 도시계획에 의한 경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도시에 위치하던 유곽이 이전된 경성부, 부산부, 원산부, 전주군, 평양부, 목포부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민족담론의 경우에는 조선인 성매매 여성 및 업소의 위치를 지정된 유곽지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된다. 결국 일제강점기 한반도 내에서의 유곽공간의 입지는 위생담론, 도덕담론, 민족담론 등 세 가지 담론 및 도시계획 등 법령 및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된 결과물인 것이다.

표 6. 제국주의적 이분법

자아(Self)	타자(Other)
남성	여성
문화	자연
능동	수동
문명	야생
진보	후퇴
이성애	동성애
제정신의	미친
서양	동양
백	흑
민주주의	전제주의
선	악
의사	병자
정상	비정상

출처 : McEwa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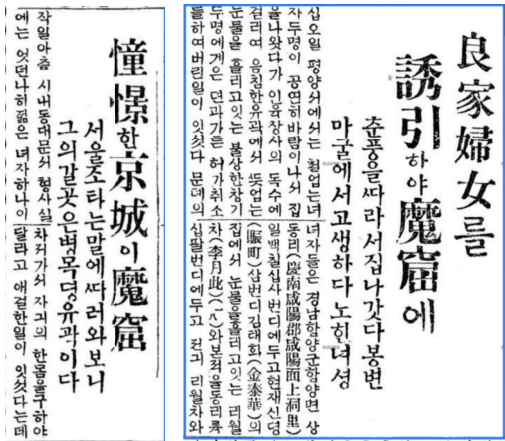


그림 7. 마굴 이미지의 유곽 기사

출처 : 동아일보, 1925년 4월 1일자(좌); 동아일보, 1927년 7월 19일자(우).

이러한 담론은 근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구성한 ‘제국주의적 이분법’과 맥이 닿는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자들에 의하면 근대 서구 제국주의는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을 구성하여 이를 제국주의적 식민지 확장의 정당성 확보를 추구한 바 있다(표 6). 실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도시에서는 백인 지배자들의 공간과 유색인 피식민지민들의 거주공간이 심상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경성과 인천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김종근, 2010; 2011a; 2011b). 유곽공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즉 유곽공간은 성병이 확산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남성 의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여성 환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었고, 1부 1처제의 근대적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악녀’들이 모여 있는 ‘환락가’였으며, 성매매가 성행하는 ‘악’의 공간이었다. 여기에 식민지라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공간만이 집중관리대상화 되었고, 조선인들이 이용한 성매매 공간에 대해서는 관리가 느슨하였다. 이는 지배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시 되고 피식민지민의 안전과 건강은 식민정부의 관심대상이 아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다.

이처럼 유곽공간은 태생적으로 악의 공간이었으며, 실제 조성된 이후에도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악의 소굴(巢窟)’ 혹은 ‘마굴(魔窟)’로 묘사되고 있었다(그림 7).³⁾ 이 결과 ‘유곽=마굴’이란 타자화된 공간 인

식은 식민사회 전반에 확산됨과 동시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지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유곽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에는 있어서는 안되는 시설이었고, 시가지 팽창으로 인해 외곽에 위치했던 유곽이 시가지 주변에 위치하게 된 경우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이전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V. 결론

일제강점기 유곽은 개화기 동안 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해 1916년 ‘대좌부창기 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이란 이름의 공창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식이 완료 되었다. 유곽이라는 이름이나 성매매 여성인 창기를 사실상 계약노예의 형태로 인신 구속한 형태의 공창제도는 일본의 전 근대적인 유곽문화가 이식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근대 의학의 이름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자행된 반인권적인 성병검진과, 사실상 감옥과 같았던 유곽에 성매매 여성을 윤택시킨 것은 ‘근대=발전’이란 담론이 가져온 어두운 이면이었다. 아울러 일본인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일본인 유곽은 철저하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반면 피식민지민이 이용했던 조선인 성매매 업소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된 현상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종론에 기반한 인종차별적 관리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에 대해 공간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유곽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곽공간은 법률상 첨부된 도면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후 식민지 조선의 도시들에 경관 상으로도 명백한 성적(性的) 타자공간의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도시 공간 내에서의 유곽의 입지를 분석한 결과 주로 도심부의 경우 도로 이면이나 시가지의 말단부, 산지나 해안으로 인근 등의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경우가 아니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유곽은 공간적으로도 타자화 및 타자공간화 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유곽의 공간적 측면 가운데 법적 인 측면과 입지 측면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유곽은 일제강점기 당시 다양한 공문서 및 미디어 상에 담론의 형태

로 표출되고 있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유곽공간의 담론적 측면을 분석하여 유곽의 공간적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유곽공간의 형성 및 이용과 관련한 성노동자, 유곽이용자, 유곽업자, 정책결정자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 또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註

- 1)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정부는 다양한 스케일의 지형도 및 도시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지도 자료는 일본과 한국 등에서 영인되어 소개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1:25,000 스케일의 지형도들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작성한 지도를 일본의 조선반도 지도자료연구회(朝鮮半島地圖資料研究會)에서 수집한 것을 1999년에 과학서원(科學書院)에서 영인하여 출간한 자료이다.
- 2) 성매매 여성이 가게 앞에 나열하도록 한 시설이다.
- 3) 이외 유곽을 마술로 표현하는 기사가 다수 존재한다(조선일보, 1925년 4월 15일자; 매일신보, 1927년 2월 22일자).

참고문헌

강정숙, 1998, “대한제국·일제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 197-237.

김경자·윤경원 역, 2004, 「성의 역사학」, 서울: 삼인.

김일수, 2015,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한국학논집, 59, 257-287.

김종근, 2010,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 38, 1-68.

김종근, 2011a, “식민도시 京城의 유곽공간 형성과 근대적 관리,” 문화역사지리, 23(1), 115-132.

김종근, 2011b, “식민도시 인천의 거주지 분리 담론과 실제,” 인천학연구, 14, 7-44.

김희식, 2012, “20세기 인천의 도시화와 매춘문제 고찰,” 역사와 경계, 85, 267-300.

김희식, 2014, “대전 매춘공간의 형성과 변화,” 역사와 경계, 93, 201-234.

김희식, 2016,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은·류교열, 2013, “근대 일본의 ‘카라유키상’: 그 실태와 이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양도시문화교섭학, 8, 1-48.

박정애, 2009,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현, 2015, “일제시기 경성의 창기업(娼妓業) 변성과 조선인 유곽 건설,” 도시연구, 14, 161-192.

방갑주, 2012, “금강(錦江) 하류(下流) 입포(笠浦) 포구취락(浦口聚落)의 변화(變化): 포구취락(浦口聚落)의 형성기(形成期) 전후(前後)를 중심(中心)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2), 217-235.

손정목, 1996, 「일제 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 서울: 일지사.

송연옥, 1998,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한국사론, 40, 215-275.

신진영, 2016, “성매매집결지의 장소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 ‘자갈마당’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야마시타 영애, 1997,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 전개,” 사회와 역사, 51, 143-183.

양미숙, 2009, “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 도입과 정착과정,” 지역과 역사, 24, 249-289.

유승희, 2012, “근대 경성 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 1904년~1945년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2, 137-174.

이정옥, 2015,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일본연구, 24, 367-391.

이현재, 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63, 111-133.

임식경, 2008, “대구읍성의 철폐와 일본인 상권의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옥, 2012,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1), 125-136.

최원희, 2012, “일제 식민지 근대도시 조치원의 출현요인, 도시체계상에서의 위상 및 도시내부구조 형성과정,” 한국지리학회지, 1(1), 99-123.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藤永壯, 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確立過程
--1910年代のソウルを中心に,” 二十世紀史, 5, 13-36.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編, 2006, 「日本軍「慰安婦」関
係資料集成 (上-下)」, 東京: 明石書店.

朝鮮半島地圖資料研究會 編, 1999, 「朝鮮半島地圖集成: 五
千分の一, 二万分の一, 二万五千分の一」, 東京: 科學
書院.

Ashworth, G., White, P., and Winchester, H.P.M., 1988,
The red-light district in the West European city:
A neglected aspect of the urban landscape,
Geoforum, 19, 201-212.

Bullough, V.L. and Bullough, B., 1987, *Women and
Prostitution: A Social History*, Amherst, NY:
Prometheus Books.

Howell, P.M.R., 2009, *Geographies of Regu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bbard, P. and Whowell, M., 2008, Revisiting the
red-light district: Still neglected, immoral and
marginal? *Geoforum*, 39(5), 1743-1755

Hubbard, P., Matthews, R., Scouler, J., and Agustin, L.,
2008, Away from prying eyes? The urban geographies
of adult entertainment, *Progress in Human Geo-
graphy*, 32(3), 363-381.

McEwan, C., 2009, *Postcolonialism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Staszak, J.-F., 2014, Planning prostitution in colonial
Morocco: Bousbir, Casablanca's Quartier réservé,
in Maginn, P.J. and Steinmetz, C. eds., (*Sub*)
*Urban Sexscapes: Geographies and Regulation of
the Sex Industry*, London: Routledge, 175-196.

동아일보, 1922년 11월 14일자, “경성교외의 장래 주택지
동남으로 발전 중”

동아일보, 1926년 10월 15일자, “광주유곽 불원에 이전?”

동아일보, 1928년 5월 25일자, “유곽이전운동 학교근방이
라고”

동아일보, 1929년 6월 27일자, “진주시화, 도로기점문제”

동아일보, 1936년 1월 7일자, “대도시의 부세확장안 6, 한
흥편”

동아일보, 1936년 3월 14일자, “신정유곽을 이전하고 경
전과 보상계약 하라”

동아일보, 1940년 3월 24일자, “빠스승환권 유료문제와
형무소 등 이전요망”

매일신보, 1927년 2월 22일자, “마굴을 탈출한 미인 진남
포 유곽의 김옥엽”

조선일보, 1925년 4월 15일자, “신정 유곽 창기가 교육을
요구! 비록 마굴에 갇쳐 있으나 후일의 행복을 구하
고자”

조선총독부 관보, 1916년 3월 31일자, 5월 18일자, 6월 1
일자, 6월 24일자, 7월 5일자, 8월 22일자, 10월 9일
자, 12월 22일자, 1917년 7월 9일자, 7월 19일자, 8월
24일자, 9월 1일자, 1918년 6월 7일자, 1921년 9월
28일자.

한국 역사지도 근대편, www.khmap.org

교신 : 김종근,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
빌딩 5층 동북아역사재단 (이메일: jgkim76@
gmail.com)

Correspondence : Jong-geun Kim, 03739, 5F, ImgwangBldg.,
81 Tongil-ro, Seodaemun-gu, Seoul, Kore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mail: jgkim76@gmail.com)

투 고 일: 2017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9일
투고확정일: 2017년 8월 16일

